제8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
안건 ②

은행-저축은행 협업
포용 온렌딩 대출방안

2026. 11.

우리은행

1 배경

□ **중·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리단층 완화**를 위해 **은행과 저축은행이 상호 협력**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**'포용 온렌딩*'**을 「포용금융 전략 추진단」 금융산업분과 회의를 통해 공동 추진

* 은행이 저축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재원으로 중·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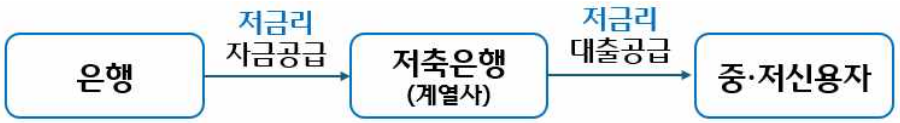

○ 분과회의를 **①온렌딩 대출구조, ②저축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공급 대상 및 금리 수준, ③실적 인정 등 인센티브 체계, ④은행법·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 특례**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방안 마련

※ 포용금융추진단 금융산업분과 논의를 통해 기획, 마련

2 주요 내용

□ **(온렌딩 자금 공급)** 은행이 저축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(신용공여) 또는 저축은행에 예치금을 맡기는 방식으로 공급 지원

○ (은행) **자본부담**과 **대출 사후관리 비용** 등이 적어 **저리 자금 대여 가능**

○ (저축은행) 별도 조달이 필요없기 때문에 **자본원가, 법적비용(예보료), 업무원가** 등 절감 가능

□ **(중·저신용자 대출 대상)** 은행권의 대표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**'새희망홀씨'** 상품 지원 대상 기준을 준용

구분	지원 대상	대출한도
새희망홀씨	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5천만원 이하 &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	최대 3,500만원

□ **(금리 수준)** 자금공급 시 **은행·저축은행 간 자율 결정**하되, 최종 소비자 **대출금리**는 **평균 10% 수준**으로 운용(등급별 상이)

○ 다만, 최종 소비자 대출금리 수준은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하여 평균 10% 수준에서 상하 변동할 수 있음

* (예) '26.10월말 기준보다 50bp 상승시 10%에서 10.5%로 조정

□ **(실적 인정)** 은행의 저축은행 대상 포용 온렌딩 자금 공급액을 **은행의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으로 인정**

3 기획형 샌드박스 지정 등

□ **포용 온렌딩 추진 관련 은행법·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규제 사항**에 대해 **기획형 샌드박스 지정 및 유권해석 등을 추진**

○ **(은행법·금융지주회사법 관련 → 기획형 샌드박스 지정)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동일 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예외 인정 및 관련 절차 간소화 특례**

현행 규제	포용 온렌딩 특례
은행법 제35조의2	**은행법 제35조의2 특례**
❶ 대주주·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 자기자본의 25% 이내로 제한	❶ **한도 산정 시 제외**
❷ 일정 금액 이상 신용공여 시 이사회 의결 및 금융위 보고·공시 의무	❷ 이사회 의결 절차 및 금융위 보고·공시 **의무 면제**
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	**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특례**
❶ 동일 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시 개별 자회사 자기자본의 10% 이내, 타 자회사 전체에는 20% 이내로 제한	❶ **한도 산정 시 제외**
❷ 자회사 상호 간 신용공여 시 공여액의 150% 범위 내 적정 담보 확보 의무	❷ **담보 의무 면제 또는 담보 설정 선택권 부여**

□ **포용금융 활성화**를 위한 **금융기관 간 대출***이라는 **측면**을 고려하여 **출연료 납부 대상**(신보, 기보, 지신보)에서 **제외**

*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은 신보, 기보, 지신보 출연료 면제되나, 소관법에서 금융회사등의 범위가 각기 다른 상황

4 우리은행 세부방안

□ (온렌딩 자금공급) 우리은행이 계열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공급

□ (방식) 신용공여 (신용대출)

□ (한도) 약 500~1,000억원 규모

□ (금리) 포용금융 성격을 감안하여

① 은행 → 저축은행 신용공여 시 전대금리(대출금리) 및

② 저축은행 →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 시 대출금리 최소화 예정

○ (은행 → 저축은행) 연 3%대 ※ 26.8월初 기준

○ (저축은행 → 중·저신용자) 연 8% ~ 12% ※ 등급별 상이

□ (기타) 실제 시행 시기 및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한도 및 금리 일부 변동 가능